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제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제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. 트러스톤 벨류웨이 소득공제 증권자투자신탁[주식]</u></p>
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~9. (생략)</p> <p>10.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p> <p>②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~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><u>부칙</u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4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